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안내사항

제Por. 9/2562호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투자촉진 시스템 시행방법(e-Investment Promotion)

2019년 12월 26일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종합 안내사항 제Por. 8/2562호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투자촉진 시스템 서비스 제공 규율(e-Investment Promotion)에 대하여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제 11항, 13항, 17항, 21항, 22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는 사항을 위임받아 투자촉진위원회는 2016년 10월 5일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6/2559호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투자촉진 시스템 시행방법(e-Investment Promotion)을 아래와 같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촉진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알림

1. 이 안내사항이 규정한 내용들중 따를수 있게 정해지지 않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투자촉진 관련 서비스 요청과 제공 시스템과 관련된 시행을 진행하는것은 전자관련 법을 따르는것으로 함
2. 위원회의 지정된 어떠한 관련 규정이나 따라야 하는 사항 및 이 안내사항 또는 빠진부분이나 대체해야 할 부분은 이 안내사항을 대신해서 따르기로 함
3. 투자촉진 요청
 - 3.1 이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가 정한 이 안내사항을 따라 투자촉진 요청 관련 정보 요청자는 요청 정보를 저장할수있으며 이는 관련 정보를 확실히 기입하기 위해 저장할수 있으며 요청자는 시스템 내에서 저장된 정보를 제출 해야함
 - 3.2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때는 "검토를 기다리는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3.4 항목을 따라 진행을 하게 될것이며 그 이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저장된 정보를 완벽한 형식안에 기입을 해야하며 이는 프로젝트를 알리는 날에 함께 보내기 위함임
 - 3.3 투자촉진 요청을 하기위한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받는자가 제대로 요청한 이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게되면 이는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기입되었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다시 내용을 수정할수없다는것을 의미함
 - 3.4 서비스 제공자는 기입된 정보가 완벽하면 서비스 제공 요청 승인을 하기전에 시스템에서 요청을 받은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했다고 알리며 만약에 기입된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 요청자에게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수정할수있다고 알리게 되며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정확히 받았다고 즉시 알리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그 다음날로 이후로 미루게 됨
 - 3.5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공지할수있는 형식을 받게 됨
 - 3.6 프로젝트가 위원회의 검토와 서류작업이 끝나게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를 알리게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알렸다는 요청서를 요청할수 있고 또는 위원회는 우편으로 이를 보낼수 있음

4. 투자촉진 관련 사항들

4.1 투자촉진 연장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촉진을 요청할수있으며 이는 고지서를 받은후 한달 이내에 해야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고 시스템을 통해 요청에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게 됨

4.2 투자촉진 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는자가 4.1 항목에 해당되는 기간내에 요청을 하지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촉진 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촉진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시스템을 통해 요청에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를 알리게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알렸다는 요청서를 요청할수 있고 또는 위원회는 우편으로 보낼수있고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최대 3번, 한번에 1달 이내로 요청할 수있음

4.3 투자촉진서 발급 요청

서비스 제공요청자는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가 지정한 서류들과 함께 투자촉진서 발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는 투자촉진을 연장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고 투자촉진 요청서 발급을 진행하며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자는 위원회를 방문해 투자촉진서를 받아야 함

4.4 투자촉진 요청서 관련 증명자료 송부 기간 연장 요청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촉진 요청서 관련 증명자료 송부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에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고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알리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위원회에서 연장 요청 승인서를 받거나 위원회가 우편을 통해 그 승인서를 보낼수 있고 이는 서비스 제공 요청자가 최대 3번, 한번에 4달 이내로 요청할수 있음

5. 검토를 사항하는 규정은 일반규정을 따르며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에 각각의 사항을 검토하게됨

6. 위의 안내사항에 따라 판단을 할수없는 경우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이 이를 판단할수있는 주체가 됨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림

2019년 12월 26일에 고시

Duangjai Asawachintachit

(Ms. Duangjai Asawachintachit)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